

2005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제89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9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1. 30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12. 10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대출시기 : 수시
- 융자지원대상 :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
-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

세부사업명 및 용도	융자기간	융자한도액	비 고
1. 경영안정자금	3년	3억원이내	
2. 기술개발자금	3년	3억원이내	
3. 시설현대화자금	5년	5억원이내	
4. 유통현대화 자금 ○ 시장재개발자금	15년	8억원이내	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 중소기업의 세부사업에 따른 융자금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조례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17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왔으며, 2004년도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억원이며, 기금적립 이자 수입금 32,000천원으로 2005년도에 3%의 이자를 지급코자 하므로 40억원의 융자금에 대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1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